

第22回
(休會中)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1993年4月1日(木) 14時

場 所：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人口增加抑制對策推進協議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審查의件
2. 서울特別市城北區手數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審查의件
3. 서울特別市城北區'93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同意案에 대한審查의件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人口增加抑制對策推進協議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審查의件(城北區廳長提出)·· 1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手數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審查의件(城北區廳長提出)······ 3面
3. 서울特別市城北區'93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同意案에 대한審查의件(城北區廳長提出)······ 4面

(14時13分 開議)

○議事係長 林洛吉 座席을 整頓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第22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休會中 第1次 行政委員會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敬禮를 하겠습니다.
國旗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旗에대한敬禮)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鎬山 行政委員會 委員長 黃鎬山 委員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參席해주신 委員님들과 區廳關係公務員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城北區 발전과 城北區民 福利增進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住民의 편에 서서 住民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해 오신 일념으로 오늘도 深度있는 審査와 效率的인 會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委員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8분委員님께서 參席하셔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休會中 第1次 行政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人口增加抑制對策推進協議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審查의件(城北區廳長提出)

(14時15分)

○委員長 黃鎬山 먼저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城北區人口增加抑制對策推進協議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審查의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區廳 側의 補充 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豫算課長은 總務局長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說明하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李鍾淳 저희 總務局長님이 오늘 環境整備本廳 22個 區廳 審査가 있습니다. 審査가 있어서 그 審査에 22個 區廳 總務局長들이 參席을 해 가지고 각 區廳 審査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審査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參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서울特別市城北區人口增加抑制對策推進協議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을 附議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特別市 城北區人口增加抑制對策推進協議會設置條例는 國民 經濟의 발전과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人口 增加 抑制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公布된 人口政策 審議委員會 규정에 의거하여 1988年 5月1日 區條例 第2號로 制定된 바 있습니다.

그 주요機能은 人口 增加 抑制 施策 方案 및 支援 方案, 家族計劃 事業 推進 및 제도 方案으로, 구성은 區廳長을 포함하여 15人 이내로 委員會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審議 協議會가 구성되어 總務局長이 委員長이 되고 副委員長에 保健指導課長을 포함,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돼 가지고 各種 행사 즉 豫備軍 教育이나 民防衛 教育, 職能團體 教育을 통해서 영구피임이라든지, 일시 피임 등을 施行해서 많은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國民의 의식변화에 따른 人口增加 둔화로 이 委員會의 設置 目的이 달성되어 90年 5月3日 母法인 人口政策 審議委員會 規定이 폐지되어 이에 副應하여 90年 7月15日 區條例를 축소 改正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骨子로는 委員長을 區廳長에서 副區廳長으로 하고 委員 數를 11人 이내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1993年 3月9日 市廳으로부터 本 條例 廢止 條例案이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가 廢止案을 附議하게 되었습니다.

委員님들의 議決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黃鎬山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宋坪柱 人口增加抑制對策推進委員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檢討 報告를 하겠습니다.

먼저 條例가 당초 制定된 목적은 人口增加抑制施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城北區 人口增加抑制對策推進委員會를 구성해서 人口增加抑制施策을 協議 調整하는 이러한 내용의 條例였습니다.

당초 1988年 5月1日 制定이 되었고 9個 조문과 附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폐지 이유는 大統領令인 人口 政策 審議委員會 규정 사항이 廢止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條例의 設置 目的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現在 運營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廢止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檢討意見은 本 條例는 國民 經濟의 안정과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人口 增加 抑制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條例였으니

條例 制定 根據 法令인 大統領令인 人口 政策 審議委員會 規定이 목적 달성에 달해 폐기 되었고, 이에따라 本 條例도 현재 運營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委員長 黃鎬山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 順序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께서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申夫浩委員 質疑가 없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다른 委員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묻겠습니다. 1988년에 條例 制定해서 1990년에 다시 改正을 했습니다. 이 委員會가 設置됐었는데 그 동안 실적같은 것, 委員會 會議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李鍾淳 그 委員會 設置는 저희 區廳長과 새마을운동 本部 城北區會長, 區醫師會長, 藥師會長, 婦女團體長으로 구성돼 가지고 運營이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90年度 改正된 이후에는 母法이 폐지된 이후에는 運營된 실적이 없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1988년에는 몇번이나 했고, 대개 보니까 폐지를 시키겠다면 차이가 있어야 될텐데, 우리 城北區에서 1988年, 1989年, 87年과 88年 이것은 設置 條例하면서 차이가 있었는지, 人口 增加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이 있어야 겠고,

○企劃豫算課長 李鍾淳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88年 設置 당시에 저희 城北區 人口數는 57萬2,665名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92年度 저희 人口가 52萬7,296名으로서 約 5萬 정도가 감소했고 그 동안에 89年度에 9,357名이 감소했고 90年度 11,963名, 91年度에 8,813名, 지난 92年度에는 15,236名으로 저희 城北區는 계속 減少 趨勢에 있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그렇게 人口 全體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出生率 지금 이 人口抑制對策 推進이라는 것은 出生을 가지고 對策을 會議를 했을 거예요. 出生率 같은 것이 보여야 되겠고, 1987년에는 出生이 얼마나 減少되었는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이것이 條例를 만드는데 불과 그 뒤

에 1988년에는 對策會議을 몇 번 했으며 89년에 몇 번 했고 이거 있을때까지, 그것을 廢止하려고 하는데 합당한 根據같은 것을 좀 說明해주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李鍾淳 지금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人口 增加 抑制策은 자연 增加率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파악된 것은 저희 城北區 管內의 자연 增加率이 파악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年度別 自然增加率이 파악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自然增加率이 1980年度에도 전체 人口의 1.5%가 증가했고 88年度에는 1%, 계속 감소해 가지고 현재 자연 增加率이 92年度の 경우 0.95%로 떨어졌고 앞으로는 계속 하향 趨勢에 있습니다.

그래서 本廳 시 次元에서도 이 條例를 그 동안에 검토를 하다가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물론 갑자기 企劃豫算課長님이 오서 가지고 企劃豫算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答辯하려고 하니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 條例案을 만들고 委員會를 했는데 몇 번이나 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라도 알려줘야지 갑자기 지금 條例,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마 人口 抑制 그렇게 중단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1988년에는 몇 번 정도 會議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서 答辯을 해 줘야지, 갑자기 오늘 總務局長이 안나온다 해 가지고 죄없는 豫算課長님이 와 가지고, 써 있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려요.

○企劃豫算課長 李鍾淳 委員會 實績은 제가 지금 資料를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書面으로 별도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더 質疑하실 委員님 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면 質疑를 終結하고 討論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委員님은 討論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이라는 얘기자?

(「예」하는 이 있음)

본 案件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議決하여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서울特別市城北區手數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審查의件(城北區廳長提出)

(14時25分)

○委員長 黃鎬山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城北區手數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審查의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區廳側의 補充 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朴洙徹 委員長님, 여러 委員님, 財務局長이 본 서울特別市城北區手數料徵收條例改正條例에 대한 補充 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서울特別市 城北區 手數料徵收條例는 88年 5月1일에 制定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年 4月1일에 1次 부분적으로 改正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說明드리는 改正 內容은 前文8條 附則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改正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條例 第3條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가지 證명의 종류, 그다음에 證明상 발급 수수료에 대한 명세를 3條에서 別표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別표에 대한 證명의 명칭 3種目에 대한 변경을 이번에 改正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昨年度에 大統領令으로 되어 있는 民願事務處理規定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證明서에 몇가지 地方稅에 대한 증명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自治團體의 區條例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本 條例 改正案은 이번에 서울시 22個 區 동시에 改正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區에서는 지난 3月5日字로 서울시로부터 大統領令에 附合하도록 改正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會議에 이 問題를 制定해 주십사 하고 案을 提出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鎬山 다음은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宋坪柱 城北區 手數料 徵收 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하겠습니다.

먼저 條例의 目的을 地方自治法에 의하여 城北區에서 徵收하는 手數料의 種類 및 金額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으로 制定되어 있는 條例가 되겠습니다.

改正理由는 大統領令인 民願事務處理 第14條 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機關의 民願事務處理基準表가 개정 고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城北區 手數料 徵收 條例의 地方稅에 關한 證明사항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改正하려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改正內容은 條例 第3條에 종류에 대한 사항이 規定되어 있습니다. 이 內容중 別표 中에서 地方稅 項目의 證明 事項의 명칭을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現在 세목별 納稅證明 또는 免許稅 納稅證明, 이 사항을 稅目別 納稅證明으로써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市稅 完納 證明 또는 課稅 證明, 이 內容은 地方稅 完納證明, 地方稅 未課稅證明 地方稅徵收猶豫證明 이렇게 변경을 한 內容입니다. 地方稅 課稅證明은 細目別 納稅證明 이러한 것 같습니다. 이로써 대치하는 內容으로 改正하려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檢討意見은 民願事務處理規定의 民願事務處理基準表가 改正告示,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城北區 手數料 徵收 條例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改正條例案이므로 條例 改正 體系의 原則에 벗어남이 없으므로 條例改正案은 타당하다고 思料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이어서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改正 內容을 보면 現行과 改正 이렇게 細目別 納稅證明 또는

免許稅 納稅證明 改正할 경우에는 細目別 納稅證明, 차이가 큼니까?

○財務局長 朴洙徹 內容은 證明자체에 발급의 趣旨나 根據가 되는 것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細目別로 納稅證明이면 충족하지, 免許稅 또는 財產稅 따로따로 할 필요없이, 細目別 納稅證明에 세목난에다 해당 세목을 記載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또 一般市民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기위한 措置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黃鎬山 市稅完納 證明 또는 課稅證明할 경우에는 地方稅로 바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財務局長 朴洙徹 國稅 이외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地方稅중에는 區稅와 市稅가 있거든요. 그런데 地方稅를 크게 분류해서 市稅가 새로 구분되는 것이고, 세금의 성격은 地方稅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우리가 볼때는 市稅하면 區稅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財務局長 朴洙徹 엄격히 말하게 되면, 현재 區稅와 市稅는 별개로 되고 있죠.

市稅 그러면 地方稅와 區稅를 포함해서 市稅 이렇게, 地方稅가 그렇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그러면 더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포괄성이 더 있다는 얘기죠?

○財務局長 朴洙徹 예.

○委員長 黃鎬山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를 終結하고 討論하도록 하겠습니다.

討論이 있으신 委員님은 討論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本 案件에 대해 異議가 없다는 얘기죠?

(「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意案에 대한 審査의件(城北區廳長提出)

(13時35分)

○委員長 黃鎬山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城北區'93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에 대한 審査의件을 상정합니다.

먼저 區廳側의 補充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朴洙徹 財務局長이 補充說明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國公有 財産을 管理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어서 國公有 財産을 用途別로 구분하게 되면은 行政財産, 保存財産 그리고 雜種財産 이렇게 크게 세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소유별로 따지게 될 것 같으면, 國유지 그 다음에 公유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國有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政府의 委任한 한도내에서 대여를 해주고 그리고 使用料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公유지도 저희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간단하게 公유지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필지수는 約 1,688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141,7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도로나 내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개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을締結해 가지고 점용료를 우리가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단 점유하고 있는 土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6件에 대한 公유지에 대한 管理計劃을 변경要請을 했습니다. 지난해 定期會議에서 기93年度에 대한 公유지재산관리 계획을 議會承認을 받아 가지고 執行을 해 왔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지난해 管理計劃이承認된 내용보고를 드리면은 처분 부분에 있어서는 6필지에 275㎡에 공시지가로 따져서 約 3億3,000분에 대한 재산을 우리가 管理計劃을 승인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로 우리 公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市民들로부터 이 公유지를 매수해 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해서 財産 活用の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民願事項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區에서는 本議會에承認을 받기 이전에 3月 初旬경에 區廳長을 보좌하는 그런 성격의 公有財産 審議會가 우리 區機關自體內에 設置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委員長을 財務局長으로 하고 土地關聯 그리고 都市計劃側面에 관계되는 關係官으로 구성된 公有財産 審議會에서 第1次 여러가지 資料나 情狀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1次 檢討를 해서 審議를 해 가지고 많은 매각 申請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여러가지 土地의 형태를 판단하고, 또 저희들이 매각하고 난 뒤에 다시 우리가 公共計劃에 必要性이 있어 가지고 다시 사들이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러한 次元에서 지적관계 또 都市計劃關係의 公務員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會議을 해오고, 또 檢討해서 이 가운데 市民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확고한 판단이 서는 것이, 바로 이번에 변경안을 提出하게 된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지번이라든지, 面積 그리고 土地의 형태 이런 등등은 그에게 本會議때 資料變更案 뒤쪽에 하나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하시면 이자리에서 제가 한건 한건 說明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委員長 黃鎬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宋坪柱

(檢討報告書는 끝에 실음)

○委員長 黃鎬山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行政委員會에서 곤란한 점이 公유지매각해 가지고 가장 곤란한 사항인것 같습니다. 公유지 賣却 여러건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거부도 했고, 또 여러가지 자체적으로 많은 討論對象이 되었는데 우리 專門委員님은 그동안 쪽보면 대부분이 이것도 타당해요.

좌우간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도 이것을 조심스럽게 다뤄려고 합니다.

本 案件에 대해서 審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네, 柳成烈委員님.

○柳成烈委員 吉音洞 586-10 소재지말입니다. 그것이 전체 평수가 약 전체 면적이 한 130평 정도되는 賣却地分이 약 30坪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큰 것 같고 30坪 정도 점유를 해서 하고 있었으나 지금 買入을 할려고 하는데 매입 신청한 사람이 그

전에는 사용료를 내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땅덩어리 자체로 봐서는 굉장히 큰데 어떻게 이것이 담장앞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물론 나가서 보고 質疑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아는데로 答辯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財務局長 朴洙徹 지금 質疑하신데 대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吉音洞 586-10호도 약 128.9坪, 426㎡ 되죠. 넓은편이나 그 중앙으로 道路가 나서 隣近住民들의 通行路로 이용되고 있는 바, 추후 福祉施設 등 공공용으로 活用할 경우 중앙에 道路를 폐쇄해야 하며 道路閉鎖時 隣近住民들의 通行路가 없어져 民願이 야기될 것이며 효용가치가 적은 잡종재산의 매각후 93年度 下半期 또는 94년에 行政財産을 취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使用料는 지금 現在 納付契約이締結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柳成烈委員 그 전에 稅務1課長, 2課長이 얘기를 하셔야 되나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작년도나, 과거에 이땅이 이렇게 구유지로 이미 되어 있는데, 使用料를 얼마나 받고 있었는지 또 現在에 이루어진 事項이 받았는지 과거에 받았는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에 안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答辯을 주셨으면 합니다.

○財務局長 朴洙徹 貸付料에 대한 金額 資料를 지금 現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꼭 貸付契約을締結해 가지고 貸付料를 徵收하고 있는 것으로 答辯드리겠습니다.

○申夫浩委員 補充質問하겠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네, 하십시오.

○申夫浩委員 柳成烈委員이 지금 質疑한데 대해서 제가 補充質問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31坪정도 되는데 이 땅을 賣却處分을 해 주면은 이 31坪중에 道路가 中央으로 나 있다는 겁니다. 賣却處分을 해서 買入하는 분이 이 道路를 그냥 사용하게 놔둘 것인지, 다만 자기가 賣却을 해서 買入을 한 후에 이 道路를 住民들이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黃鎬山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申夫浩委員 왜 그러냐하면 아까 財務局長께서 우리 區에 公有地로 할 적에는 이 道路를 못쓰게 하면은 住民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고 등등하는데 個人이 이것을 買入을 할 때는 반발이 없을 것이냐 이거예요. 구유지로 할 때는 반발을 하고 개인이 할 때는 반발을 안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問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委員長 黃鎬山 우리 申夫浩委員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道路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매수자가 매수를 하고난 뒤 그 道路를 계속 쓰게 할 것인지, 이런 問題라는 얘기에요.

만약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매수하고 나서는 분명히 그 답을 쳐서 통행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럴때 民願 야기사항, 그리고 그 道路가 정말 쓸모가 있으면은 우리 구유지니까 區民에게 잘 활용하도록 도로로 해 놓는 것이 나아요.

○李天浩委員 局長님, 補充質問하겠어요. 지금 賣却하는 31坪 내에 道路가 있는 것이 아니라 586-10번지 내에 道路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朴洙徹 네, 그렇습니다.

○李天浩委員 여기하고는 關係가 없죠?

○財務局長 朴洙徹 통행에는 關係가 없습니다.

○李天浩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우리한테 준것에 이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알수가 있어요. 그런데 31坪 내에는 建物이 있습니까. 지금? 無許可라도 建物이 있으면, 이것이 나대지같으면 담장을 못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朴洙徹 현재 建物 담장선이라고 해 가지고 기다랗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李天浩委員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道路와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財務局長 朴洙徹 그렇습니다.

○柳成烈委員 한번만 더 물겠습니다. 도로는 나가서 보면은 우리가 理解가 가는 부분일 것이고, 제가 궁금스러운 것은 지금 資料를 要請을 하면은 지금 팩스로 금방 올라올

수 있죠?

○稅務1課長 朴容浩 可能합니다.

○柳成烈委員 이것의 지나온 行爲自體, 보관된 것, 그 書類를 資料를 要請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 싶은데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財務局長 朴洙徹 가능합니다.

○柳成烈委員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行政監査를 할 당시에 보편은 사실 하도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指摘해서 보기가 어려운 問題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차제에 그것을 한번 봤으면 해서 그러는데 좀 어렵더라도 資料를 요청할테니까 어렵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제가 局長님한테 묻겠어요. 說明書 4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1페이지에서 吉音洞 586-10 이렇게 쪽하면서 住宅 5個洞에 占有하고 있고 또한 土地의 중앙에는 道路가 나서 隣近住民들의 通行路로 이용되고 있어 활용가치가 적으므로 賣却됨, 지금 그러면 4페이지에 보면은 ㄱ, ㄴ, ㄷ 밑에 오면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그러면 ㅅ것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財務局長 朴洙徹 그렇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그러면 ㅁ까지 합해서 128평인지, 이 ㅁ은 빼고 난 것이 128坪인지, 이거 지금 구분이 안되고, 이 ㅁ이라는 通行路가 실제로 어떤 道路가 해당되는지? 실제적인 道路가.

이것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시고, 실제가 道路인지, 제가 볼때는 실제가 도로가 아니고 구유지로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분들이 그 안에서 區有財産을 조금씩 점유하고 살면서 그 사람들 가는 길에 불리할 우려가 있다, 이 質問에 答辯해 주시고, 다음 또하나 작년 年末 12月해서 지금 3個月 밖에 안되었습니다. 昨年 年末에 今年에는 한 6件만 팔겠다 하다가 3個月도 안 돼서 다시 6件을 追加해서 12件으로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7共和國 金泳三政權에서 특히 이 땅 問題 가지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쪽 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살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면 93賣却 對象 財産目錄이라는

3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城北洞 것은 김용태씨 이 사람이 龍山區에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地方自治 내에서 사는 사람만 꼭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地方 사람들이 될 수 있는대로 惠澤을 보고, 될 수 있는대로 거기에 活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김용태씨는 龍山區 효창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또 최상섭씨는 道峰區 미아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吉音洞 것 사겠다는 사람, 그리고 吉音洞 586 필지도, 吉音洞 631-7 이 양반은 2個를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종암동 것 보면 23-1번 해가지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직자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없는 사람에게 惠澤을 주든지 그래야지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朴洙徹 지금 委員長님께서 구체적 質問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申請人이 다 우리가 이번에 賣却하겠다는 필지의 建物所有者입니다. 그래 가지고 물건지하고 申請人의 주소지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建物の所有者는 여기에 나와 있는 효창동, 미아동, 길음동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李天浩委員 質問하겠습니다. 그런데 所有者라는 개념이 물론 그 사람들이 주저 않아 있어서 所有者지만 이게 시유지나 구유지를 눌러 앉아가지고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듯 세 받아 먹고 이런 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주소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賣却을 해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委員長님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앉았다는 權利 하나만 가지고 자기들은 우리 정당한 市稅 이상으로 稅를 받아 먹고 있는 현상이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排除하기 위해서 委員長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것을 놔두고 다음에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례가 없도록 단호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ト定安委員 添加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局長님, 구유지 내지 시유지를 취득할 수 있는 時効取得 연한이 있을 겁니다. 어저께

산 사람들, 한달전에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權限이 있으면 거기에다 拂下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時效取得의 연한에 위배된 事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시유지 내지 구유지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오랫동안 占有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우선 순위로서 權利 取得할 수 있다고 하는 慣例 아니면 어떠한 法的인 條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마는 저는 法律關係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관례적인 事項으로 봐서는 占有하고 있는 占有者가 오랫동안 占有하고 있으면은 그분한테 우선 權限이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內容을 보면 역시 우리 委員長님께서나 우리 李天浩委員長님께서 質疑하신 內容이 바로 時效取得의 연한이 어떤 법적인 根據의 연한까지는 채워져 가지고 그것의 拂下를 要請했고 또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알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優先權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돈주고 그 땅을 사 가지고 拂下賣却은 쉽니다, 굉장히 싸거든요, 현 시가에 비해서 그렇죠.

○財務局長 朴洙徹 아니요 뭐, 賣却貸金은,

○卜定安委員 賣却貸金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朴洙徹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卜定安委員 아니죠, 市價보다 싸죠?

(「市價보다 싸죠」하는 이 있음)

○財務局長 朴洙徹 鑑定價,

○卜定安委員 鑑定價格도 市價보다 굉장히 싸니까 이 땅은 내가 사서 拂下를 받겠다 하는 의도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략 그런 점유지는 또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도 그렇고 市價보다도 싸게 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委員長 黃鎬山 제가 한 가지 財務局長님이 理解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유지 賣却 申請이 와서 제가 吉音洞에 한번 가 봤습니다.

吉音洞에 간 땅은 실제 사는 사람은 東大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의 가게가 한 서너분의 가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東大門에 사는 사람한테 매달 몇십만원씩 돈을 줬어요. 지금까지 쪽, 그러니까 그 집이 제가 알기로는 세 집인가 두 집인가인데 매달 주니까 적어도 50에서 100萬원은 항상 받았어요. 1년에 1,000萬원 가까이를 이 사람들이 벌었어요. 그러면서도 작년에 그 사람은 區廳에다가 돈 1원도 안 냈어요. 구유지 사용하고 있는데도 돈 1원도 안 냈어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區稅 收入이나 이런 쪽에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地方自治 하자는데 우리 地域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惠澤을 받고 또 愛鄉心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양반은 분명히 작년도에 제가 그랬는데, 그 양반은 사는 이유가 있었어요. 앞에 구유지가 있고 뒤에 자기 땅이 있어 가지고 앞에 것을 사야만 建物을 짓습니다. 그러면 建物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건물 지어 다시 임대해 가지고 또 받아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建物을 짓지 않을 경우에도 절대 사지 않고 지금도 몇 십만원씩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짓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 여기에도 보니까 龍山區 사람들, 道峰區 사람들이 이름이 있어요. 이분들 이제 地方自治답게 執行部에서 研究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종암동같은 것도 보면 상당히 김동환씨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지만 뒤에 살아요, 여기에 보니까, 23-1번 뒤에 사는데 이 분이 지금 전부 사겠다는 얘기에요,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 23-78은 어디냐, 그 소유주는 누구냐는 얘기에요. 이것도 명확히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이제 土地公概念 이런 얘기들도 다시 거론되는데 龍山區 효창동에 사는 김용태씨 이분은 말이죠, 여기 매입해도 반드시 여기서 살지를 않습니다. 龍山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占有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城北區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惠澤주는 것 보다는 우리 區民들에게 실제적인 惠澤을 주는 모색, 법으로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아까 卜定安委員長님이 指摘을 해주셨듯이 그러한 점이 이제는 모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지금까지 특히

李天浩委員長께서 이것을 현장답사를 한 뒤에 다시 審査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委員長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여러 委員長들께서 本 案件에 대해서는 現場踏査後 審査하자고 하시니까 다음에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城北區'93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案은 現地踏査後 再審査하기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區廳關係官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議事日程 論議가 끝났으므로 會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02分 散會)

○出席委員 9人

李 天 浩	柳 成 烈	申 夬 浩
金 光 鎬	徐 化 錫	卜 定 安
金 知 雲	黃 義 揮	黃 鎬 山

○缺席委員 5人

鄭 喆 植	申 晉 玉	申 宗 鉉
徐 海 善	李 三 田	

○出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坪 炷
---------	-------

○參席公務員

財 務 局 長	朴 洙 徹
企 劃 豫 算 課 長	李 鍾 淳
稅 務 1 課 長	朴 容 浩